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9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5. 26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7670호, 2005. 8. 4. 공포) 및 동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9322호, 2006. 2. 8. 공포)으로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 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에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 (안 제2조)
나.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- 고성군 공고 제2006-294호(2006. 4. 28. ~ 2006. 5. 18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
- 나. 관계법령 및 근거
- 지방자치법 제32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3
- 경상남도 기획관-735(2006.2.7.) :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

4. 본 문

- 불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 “제15조의2”를 “제15조 의3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, “회기수당율”을 “의정 활동비율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사망이나”를 “사망,”으로, “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”을 “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 중 “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”을 “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고성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	제명 :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 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15조의2</u> 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5조의3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회기수당”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회기수당</u> 을 말한다.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의정활동비</u> ----- ----- <u>의정활동비를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직무로 인한 <u>사망</u> 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. (생 략)	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1. ----- <u>사망</u> , ----- ----- <u>경상남도</u> 의회의원 당해연도 <u>의정활동비</u> --- ----- 2.----- <u>경상남도의회의원</u> 당해연도 <u>의정활동비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